

강사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강사는 담당교과목에 관한 교육·지도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자격)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,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4조(결격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
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면직된다.

제5조(임용일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(전임교원, 강사, 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,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사망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2. 교원의 출제위원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업을 일정기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3. <삭제>

제7조(당연퇴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
1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2. 재임용이 거부된 자
3.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(이 경우,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)
4. 교원의 1년 이상의 연구년, 휴직,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임용된 자

제8조(교원인사위원회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 라 한다.)에서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
제9조(강사심사위원회)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학과(전공 및 부서를 포함)에 강사의 신규임용·재임용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강사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각 학과(전공 및 부서를 포함)의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각 학과의 학과장(전공주임, 부서는 부서장)으로 한다.

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위원구성이 3인에 미달하는

경우,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또는 유사학과의 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(신규채용 절차 등) ① 강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계약세부사항) 강사를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1. 임용기간
2. 임금
3. 면직사유
4. 재임용 조건 및 절차
5.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

제12조(재임용) ① 강사에 대해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총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, 그 이후로는 재임용 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른다.

② 강사의 재임용에 따른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강사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문서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포함)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강사가 재임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상기기간 내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
⑤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재임용 심사 과정 중에 강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⑦ 계약으로 정한 면직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 하지 않는다.

제13조(면직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.

1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2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3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4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5.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,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

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
1. 소속 학과(전공) 등 학사조직의 폐지

2. 교과과정 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
3. 중징계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4.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용된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
5. 교원의 1년 이상의 연구년, 휴직,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임용된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

③ 제1항 내지 제2항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14조(강의시간) ①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6시간 범위 내에서 학과사정 및 교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,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담당 교과목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5조(복무)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강사는 본교에 임용된 이후, 본교 이외의 기관에 겸임하는 경우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의원 사직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휴직)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.

1.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
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5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6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하는 경우

제17조(징계) ① 강사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은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전임 교원으로 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강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,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4. 그밖에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③ 총장은 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
④ 강사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
제18조(급여 등) ① 강사료는 학기단위로 산출하며, 방학기간 중 강의기획, 과제물 평가 등의

업무를 고려하여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한다.

② 계절학기를 담당하는 경우,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강사료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「강사료지급규정」에 따라 정한다.

④ 강사의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제1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(제정 <2019 제5차 교무위원회>)

제2조(경과조치)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강사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「시간강사위촉에 관한 내규」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(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, 제6조 제2항 제3호 삭제 <2019 제13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(제7조 제4호,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개정, 동조 동항 제5호 신설 <2020 제27차 교무위원회>)